

중재판정

정본

KCAB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

중재판정

증재 제23113-0006호

신청인 : 주식회사 제이씨리소시스(JC RESOURCES Co., Ltd)

주 소 :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1층 1110호(가
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8차)

대표자 : 사내이사 김현수

위 대리인 : 정주현

주 소 :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1층 1110호(가
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8차)

피신청인 : IMS Stainless & Alloys OÜ (registry code 14976408)

주 소 : Narva Mnt 13a, Tallinn 10151, Estonia

법인등기부상 주소 : Harju maakond, Tallinn, Kesklinna linnaosa,
Jõe tn 4c, 10151, Estonia

대표자 : Sharon Bashan

위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김재영, 최용문

주 소 :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8층



중재지 : 대한민국 서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05,875.9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금 957,550원을 지급하라.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 각자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필요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신청취지¹⁾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05,875.91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 신청인은 2023. 2. 2.자 중재신청서를 통해 "(i) Ordering the Respondent to pay total USD 105,875.91 (=USD 17,840 + USD88,035.91) to the Claimant; (ii) Ordering the Respondent to pay the Claimant interest on any amounts awarded to Claimant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of this Request for Arbitration until final payment of any awarded amount; (iii) Ordering the Respondent to reimburse the Claimant for all costs the Claimant incurs in this arbitration including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the KCAB administrative expenses; (iv) Ordering further relief as the Arbitral Tribunal deems appropriate"를 청구하였다(2023. 2. 2. 중재신청서를 통해 "Declaring that the Respondent did not issue claim in time and did not respond to Claimant's cooperative solution and compensation proposal"도 구하였으나 제1차 심리기일에서 신청인은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대리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신청인의 (i), (ii) 청구 부분은 신청취지 1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05,875.91달러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이해할 수 있으며, (iii) 청구 부분은 신청취지 2항과 같이 "중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iv) 청구 부분은 중재판정부에 특정한 신청을 구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신청취지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지급하라.

2. 중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판정이유

1. 이 사건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

가. 신청인은 2023. 2. 2.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갑제1호증 내지 갑제62호증과 함께 제출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23. 3. 2.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달하였다.

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023. 6. 21. 양 당사자에게 단독중재인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23. 7. 11. 이메일을 통해 ① 절차일정표(timetable)에 대한 의견, ②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를 한국어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 7. 12. ①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라는 점, ② 피신청인은 2023. 8. 21.까지 한국어로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③ 신청인은 2023. 7. 31.까지 중재신청서의 핵심 주장을 한국어로 작성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23. 7. 31. 중재신청서의 핵심 주장을 한국어로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8. 18. 이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증명방법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중재판정부는 절차일정표에 따라 2023. 9. 5. 예비절차회의(Preliminary procedural conference)를 개최하여 신청인 사내이사 김현수와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김나윤 변호사, 위 법무법인 이유진 대리가 참석



한 가운데 향후 중재절차를 협의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3. 9. 22. 갑 제63호증부터 갑 제79호증까지 첨부하여 제1차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10. 17. 제1차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바. 중재판정부는 절차일정표에 따라 2023. 10. 19. 심리준비회의(Pre-hearing conference)를 개최하여 신청인 사내이사 김현수와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최용문 변호사, 위 법무법인 이유진 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2023. 11. 3.에 열릴 심리기일의 순서, 변론방식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사. 신청인은 2023. 10. 31. 제2차 준비서면을, 2023. 11. 2. 제3차 준비서면(갑 제80호증에서 갑 제83호증까지 첨부)을 각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11. 2. 을 제5호증에서 을 제7호증까지 제출하였다.

아. 2023. 11. 3. 제1차 심리기일이 중재원 제4심리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기일에는 신청인측에서는 사내이사 김현수, 관리이사 박재학, 감사 김미경이, 피신청인측에서는 법무법인(유한) 예율 변호사 최용문, 위 법무법인 이유진 대리가 각 출석하였다. 양측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양측의 구두변론과 중재판정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제1차 심리기일이 진행되었다. 중재판정부는 같은 날 국제중재규칙 제31조에 따라 2023. 11. 3.자로 심리가 종결됨을 선언하였다.

자.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신청인의 동의하에 국제중재규칙 제4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23. 11. 8.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갑 제84호증부터 갑 제87호증, 2023. 11.



4.자 추가서면, 2023. 11. 8.자 추가서면을 각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을 제8호증부터 을 제10호증, 2023. 11. 3.자 추가서면, 2023. 11. 8.자 추가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2. 중재합의와 준거법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규정된 중재조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고, 이에 따른 중재판정은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바(갑 제54, 59호증),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관할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²⁾

3. 기초사실

다음의 기초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3호증에서부터 갑 제6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1) 2022. 2.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Molybdenum Scrap 4,000kg(이하 ‘이 사건 1 물품’이라고만 한다)을 미화 178,400달러(1KG당 미화 44.6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2) 2022. 2. 25.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Molybdenum Scrap 20,000kg(이하 ‘이 사건 2 물품’이라고만 한다)을 총대금 미화 880,359.06달러[= 대금 미화 880,000달러(1KG당 미화 44달러) + SGS SERVICE 미화 359.06달러]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하는데(중재법 제17조 제2항), 양당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90%는 피신청인이 선적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이 사건 1 물품이 목적항인 영국의 펠리스토항구(Felixstowe, UK)에 도착한 후에 또는 예상도착일(ETA)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90%는 피신청인이 선적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이 사건 2 물품이 영국이나 미국의 주된 항구(the main ports of UK or USA)에 도착한 후에 또는 예상도착일(ETA)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1 물품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라 2022. 5. 20. 영국의 펠리스토항구(Felixstowe, UK)에 도착하여 피신청인측에 인도되었고, 이 사건 2 물품은 이 사건 2 매매계약에 따라 2022. 5. 22. 영국의 펠리스토항구(Felixstowe, UK)에 도착하여 피신청인측(피신청인이 지정한 SJM ALLOYS & METALS LTD)에 인도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1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화 160,560달러(= 미화 178,400달러 × 90%)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2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화 792,323.15달러(= 미화 880,359.06달러 × 90%)를 지급하였다.

4.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1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1 물품에 대한 잔금 미화 17,840달러(= 미화 178,400달러 ×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2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2 물품에 대한 잔금 미화 88,035.91달러(= 미화 880,359.06달러 ×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하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들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설령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해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어서 그 손해액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판단

가. 법리

이 사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법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같이 청구원인으로 매매대금과 함께 자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즉 매매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대금지급기한의 도래를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피신청인과 같은 상대방은 항변 사실로 하자의 존재를 증명하여 대금감액 내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61조). 즉 하자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2)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



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3)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불완전이행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완전하다는 점, 이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불완전이행책임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완전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나. 이 사건 1 물품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1 물품의 인도, 대금지급기한의 도래를 모두 증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1 물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1 물품에 불순물이 많은 하자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자는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1 물품에 불순물이 많으므로 신청인이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완전이행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신청인)의 채무이행이 불완전하다는 점, 이에 대한 채무자(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1 물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2 물품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2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2 물품의 인도, 대금지급기한의 도래를 모두 증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2 물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2 물품에 텅스텐(W)의 비율이 높은 하자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2 매매계약서(갑 제58호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텅스텐(W)의 비율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Molybdenum Scrap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 사건 2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 을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피신청인과 거래한 제3자인 SJM ALLOYS & METALS LTD가 AS International Corporation Ltd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AS International Corporation Ltd는 이 사건 2 물품의 텅스텐(W)의 비율이 1.05%에 이른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객체인 물품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검사기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합의하에 검사기관을 정하는



것이 국제거래관행에 부합한다. 그 이유는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정하는 경우에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고 그 검사기관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 물품이 피신청인측에 도착한 이래 피신청인측이 이 사건 2 물품에 대하여 하자를 언급하자 신청인은 중립적인 제3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하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신청인은 이 사건 2 물품 선적 전에 텅스텐(W)의 비율이 0.45%에 불과하다는 검사를 받아 그 검사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였고(갑 제84호증의 기재), 이 사건 2 매매계약서(갑 제59호증)에도 ‘매수인이 하자로 인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또는) 선적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청구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he Buyer may lodge a claim with the Seller supported by survey report issued by an inspection organization agreed upon by both parties, with the exception, however, of those claims for which the insurance company and/or the shipping company are to be held responsible)’ 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신청인은 더욱 국제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중립적인 제3의 검사기관에 하자 유무의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거래한 제3자(SJM ALLOYS & METALS LTD)의 의뢰에 따른 검사결과(AS International Corporation Ltd 작성)만을 제출하였는바,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2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2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도과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에 해당하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간의 약



정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2 매매계약서(갑 제59호증)에 따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품질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목적항에 물건 도착 후 30일 이내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The claim for quality discrepancy should be filed by the Buyer within 3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는 약정을 하였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정한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2 물품이 2022. 5. 22.에 도착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2022. 7. 27.에서야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였다(갑 제34호증의 기재).

결국 피신청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①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2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끝으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2 물품에 텅스텐(W)의 비율이 높아 신청인이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완전이행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이행이 불완전하다는 점, 이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2 물품의 텅스텐(W)의 비율에 대하여 중립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채무이행이 불완전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1 물품에 대한 잔금 미화 17,840 달러와 이 사건 2 물품에 대한 잔금 미화 88,035.91달러의 합계 미화 105,875.91달러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중재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23.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신청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중재비용과 관련해서는 국제중재규칙 제52조에 따라 1,888,050원(신청인 957,550원, 피신청인 930,500원 각 납입)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각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필요비용은 위 국제중재규칙 제53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각기 자신들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023. 12. 4.



단독중재인 : 이민자
이 계정

